성폭력·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|
| 1 | 2019.1.7 | | 16 | | |
| 2 | 2020.8.24 | | 17 | | |
| 3 | | | 18 | | |
| 4 | | | 19 | | |
| 5 | | | 20 | | |
| 6 | | | 21 | | |
| 7 | | | 22 | | |
| 8 | | | 23 | | |
| 9 | | | 24 | | |
| 10 | | | 25 | | |
| 11 | | | 26 | | |
| 12 | | | 27 | | |
| 13 | | | 28 | | |
| 14 | | | 29 | | |
| 15 | | | 30 | | |

성폭력 ·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 칙

- **제1조**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, 성폭력 및 성희롱의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신체적,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,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육체적 행위
 - 가.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
 - 나. 가슴,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 - 다.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
 - 2. 언어적 행위
 - 가.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
 - 나.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
 - 다.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 - 라.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 - 마.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
 - 바.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
 - 3. 시각적 행위
 - 가. 외설적인 사진, 그림, 낙서,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 - 나.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, 사진,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
 - 4.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
 -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.
 - ③ 성차별이라 함은 개인의 학업평가, 고용, 인사 등의 공적인 생활에서 특정한 성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정관에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, 그 밖에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

- 는 제 3자가 가해자,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포함한다.
- **제4조** (피해자 중심의 원칙)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조사, 심의,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5조 (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) ① 사건처리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〈개정 2019.1.7〉

- ② 사건처리 관계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상 알게 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 〈개정 2019.1.7〉
- ③ 피해자 및 참고인들은 상담소에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
〈신설 2019.1.7〉

제2장 담당기관

제1절 학생생활 · 성평등상담소

제8조 (업무)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성폭력, 성희롱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기록
- 2. 성폭력,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
- 3.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
- 4. 성폭력,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
- 5.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
- 6. 담당자들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지원 〈신설 2019.1.7〉

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

- 제9조 (설치)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학생생활·성평등상담소장으로 한다. 사무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팀장, 책임상담연구원, 피해자가 관련된 주무부서장(주무부서장 부재 시 팀장)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피해자가 교수일 경우 교원 3인, 직원일 경우 직원 3인, 학생일 경우 학생 3인을 추천위원으로 선임한다. 전체 위원들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.

〈개정 2019.1.7〉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. 단 유고 및 부재 시, 교무처장이 위원장을 대신한다. 〈개정 2019.1.7〉
-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④ 위원회 내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 · 성평등상담소 상담연구원을 간사로 둔다.
- ⑥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맞추어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 〈신설 2019.1.7, 개정 2020.8.24〉
- 제11조 (업무)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
 - ②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
 - ③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
- 제12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담소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처리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.
 - ②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3장 성폭력 · 성희롱 사건의 처리

- 제13조(신고 등) ① 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상담소에 대하여 성폭력·성희롱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.
 - ③ 상담소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④ 상담소장은 신고 된 사건의 조사 및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심의·의결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· 의결한다.
 - ④ 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.
- 제15조(징계 및 조치)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제2항에 명시된 조치를 시행한다.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, 교원의 경우는 교무처, 직원의 경우는 사무처, 학생의 경우는 학생처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 - 1. 가해자의 대면 사과 〈개정 2019.1.7〉
 - 2. 가해자에게 성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〈개정 2019.1.7〉

- 3.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분리조치 〈개정 2019.1.7〉
- 4. 가해자의 사회봉사
- 5.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
-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,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,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,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,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세칙)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「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·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」,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례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3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